

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65244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6524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4688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1. B

2. C

3. D

변론 종결 2018. 5. 2.

판결 선고 2018. 6. 2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4688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인천 남구 E 대 255m²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연와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 97.44㎡를 철거하고, 인천 남구 E 대 255m²를 인도하며, 6,110,552원 및 2017. 5. 27.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77,7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C, D은 위 주택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주영

판사심승우

판사이민호

별지